Global Standard
두산 We've

하늘채

수원의 첫번째 자부심이 될 최고 주거명작

매탄 위브·하늘채

모 • 집 • 공 • 고

분양사무실 및 현장 위치도

문의전화 031)211-5150

시행 매탄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시공 DOOSAN 두산건설 코오롱건설

※ 자금관리 : 공동시공사 두산건설(주), 코오롱건설(주) & 사업시행자 매탄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공동관리
※ 본 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적용됩니다. ※ 본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원의 중심,
신매탄에 수원을 대표할 초특급 주거 단지가 탄생합니다

수원 생활의 중심, 신매탄! 위브와 하늘채의 빛나는 가치! 3,391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
세계적인 도시, 수원에서 어울리는 세계 수준의 생활이 옵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 투시도 · 이미지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탄 두산위브하늘채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경기도 수원시 주택정책과 - 8113호 (2008. 7. 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990번지외 6필지
- 대지면적 : 189,510.0㎡
- 공급규모 : 지상18층 ~ 30층, 아파트 35개동 총 3,3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반분양 35세대 (3자녀 특별공급 1세대 포함)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면적단위 : ㎡)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당대지지분	층수 (층)	공급세대수 (세대)
민영주택	22007-01	2008000651(01)	81.0555	59.9845	21.0710	81.0555	23.3044	104.3599	30.3589	24	26
	22007-02	2008000651(02)	98.0061	72.9079	25.0982	98.0061	28.3252	126.3313	36.8997	22	2
	22007-03	2008000651(03)	107.9508	84.8180	23.1328	107.9508	32.9524	140.9032	42.9275	30	6
	22007-04	2008000651(04)	131.2995	103.4857	27.8138	131.2995	40.2049	171.5044	51.6990	22	1

(면적단위 : ㎡, 금액단위 : 천원 / 부가세 포함)

주택형	층별구분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단위:천원) 대지비	건축비	계	총분양금액	계약금(계약시) 2008.08.06~08.08	잔금 (2008.09.12)
81.0555	1층	5	103,500	126,500	230,000	230,000	23,000	207,000
	2층	12	108,000	132,000	240,000	240,000	24,000	216,000
	3~8층	5	110,250	134,750	245,000	245,000	24,500	220,500
	10~18층	4	117,000	143,000	260,000	260,000	26,000	234,000
98.0061	7층	1	153,000	187,000	340,000	340,000	34,000	306,000
	10층	1	157,500	192,500	350,000	350,000	35,000	315,000
107.9508	1층	2	162,000	198,000	360,000	360,000	36,000	324,000
	2층	1	166,500	203,500	370,000	370,000	37,000	333,000
	5~7층	3	180,000	220,000	400,000	400,000	40,000	360,000
131.2995	11층	1	256,500	313,500	570,000	570,000	57,000	513,000

발코니 확장 기 설치 세대

(면적단위 : ㎡, 금액단위 : 천원 / 부가세 포함)

주택형	동	호수	발코니 확장공사비
81.0555	106동	301호	11,084
	106동	1206호	11,084
98.0061	105동	703호	12,503
107.9508	120동	202호	12,461
	122동	102호	13,811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옵션 선택이 불가능함. ※ 상기 추가 납부금 세대는 발코니확장 등의 시공이 기 완료된 세대로서 발코니 확장, 발코니 샤시 등 옵션품목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므로, 분양가 외에 상기에 명시된 금액을 반드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수립한 각 실별 평면 계획에 대하여 사업승인받은 아파트로 계약자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실별 이용에 불편이 있을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사업주체인 재건축주택조합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공정이 80%를 초과하여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관계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기계실,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발코니 샤시 비용 등 별도 계약 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 주택형 81.0555㎡(106동301호, 106동1206호), 98.0061㎡(105동703호), 107.9508㎡(120동202호, 122동102호)는 이미 발코니 확장 등의 옵션 공사가 이루어진 세대로 상기 명시된 추가 납부금을 납부하여야만 계약 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의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라인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가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상기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3. 6. 7부터 시행)되어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최초 입주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경기도 수원시는 2003. 6. 7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계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을 소유한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사실 포함]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는 가능)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니, 청약 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는 가능)됨

인터넷 · 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KB 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MBank 전용휴대폰 중 WIPI폰 기종만 이용 가능)	-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접속
	KB 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KBStarnet → 모바일 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LGT : KB뱅킹 접속 → 모바일 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1세대)]

주택형㎡	81.0555	98.0061	107.9508	131.2995	계
경기도	1	-	-	-	1
서울시	-	-	-	-	-
계	1	-	-	-	1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7.1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단,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재당첨 금지 적용자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이어야 함 ※ 자녀 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 3자녀 특별공급 세대 : 일반공급 35세대 중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인 1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7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50%를 각각 공급함(위의 표 참조)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 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 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년월일 계산)이 많은자의 순으로 공급함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매탄 위브하늘채 현장 (분양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07. 22 (화) 10:00~14:00 / 매탄 위브하늘채 현장 (분양사무소)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07. 22 (화) 16:00 / 매탄 위브하늘채 현장 (분양사무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3자녀 특별공급시 배점기준-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 영 · 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 · 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공통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분양사무소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7 . 17)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통(아래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위임장(당사 분양사무소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7.17) 현재 수원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가능
- 수원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원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수원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 2 ·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 "당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 제3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
  -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제3조 제2항 제9호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주택공급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원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시, 군, 구청에 반드시 확인할것
  다. 제3조 제2항 제10호부터 제 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 "한국철도시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 ·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라. 제11조 · 제11조의 2 · 제12조 · 제12조의 2 · 제13조 · 제19조 ·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마.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제16조 제 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는 당첨자로 본다.
  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법 제41조의 2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자. 임대주택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3.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 [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수원시 및 서울시/ 경기도	2008.07.23 (수)	• 접수장소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KB 모바일 : Mbank, Kbank Bankon • 접수시간 : 08 : 30 ~ 18 : 00	• 발표일시 : 2008.08.01 (금) • 신문 : 한국경제신문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 및 홈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102㎡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상 경과한 분 • 1980. 8. 29.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에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 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청약자 본인, 배우자(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한 분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 (단, 1주택 소유로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				
	2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07.24 (목)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 (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				
	3순위	전 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2008.07.25 (금)	• 접수장소 : 농협본 · 지점 • 접수시간 : 09 : 30 ~ 16 : 3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이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시간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가점제 공급기준

구분	면적구분	공급기준
청약가점제	전용면적 85㎡ 이하	•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75%를 우선 공급함 [나머지 25%는 추첨제(일반공급)를 적용함]
	전용면적 85㎡ 초과	•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50%를 우선 공급함 [당 공급물량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써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방법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일반공급)를 적용함]
	공통사항	• 각 주택형별로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순위를 취득한 자 • 가점제 신청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가점항목	가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점 만점 기준				
※ 비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제③항, 제12조 제③항, 제⑤항, 제⑦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감점 산정기준

감점 항목			감점점수
구 분	기 준	소유주택수	
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③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제①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①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적용 기준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주[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③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써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 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 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소유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장기간 보유 특례)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경과 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 평형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함.
•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미만인 자는 변경전 면적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일반공급 신청접수 방법

• 공통 : 층별 · 동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수원시 및 서울시/경기도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입주자 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 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각 지역별,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85㎡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농협 비치) • 청약예금, 부금통장 (1 ·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본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85㎡이하	85㎡ 초과	신청금 납부방법 (창구 청약자에 한함)
청약신청금	100만원	200만원	창구 청약시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08. 08. 04)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은행 본 · 지점
•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 (당첨자 포함)
• 구비서류 :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② 주민등록증 ③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①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②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③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④ 위임장
• 제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단, 청약자 본인이 청약접수한 은행 계좌에서 지정계좌로 이체신청을 통해 입금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경기도 수원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원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보다 많은 경우 수원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분양사무소에 별도 공고함

※ 재건축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계약자에 기 배정된 동 ·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 · 호수에 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 호수를 결정함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 2008. 8. 6 (수) ~ 2008. 8. 8 (금) (3일간, 시간 :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중앙회	1109-17-006750	매탄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조합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농협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각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자의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계약조건 등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1 · 2 ·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제원에 5년이내 재당첨여부 검색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금융결제원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이 없음)
• 아파트의 배치 ,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적용함.

입주예정일 : 잔금 완납후 즉시 입주

• 잔금을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4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노인정 2개소,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2개소, 문고, 정보문화실등

융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터넷 · ARS ·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 청약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확인
	이용기간	• 10일간	• 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 1588-9999 (서비스번호 : 770)	• 1369 (서비스번호 : 5# → 1#)
	이용기간	• 10일간	
KB 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 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뱅킹 접속 → 모바일 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이용기간	• 10일간	-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당첨자 명단은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의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바람)

유의사항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4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노인정 2개소,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2개소, 문고, 정보문화실등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선 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 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시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샘플하우스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샘플하우스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샘플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사진 및 비디오로 샘플하우스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샘플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샘플하우스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샘플하우스를 참고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및 기능의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 / 전기 /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급배기구, 정화조,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필요에 따라 폐쇄공간이 발생될 수 있음(계약시 확인요망) •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 본인의 판단하에 설치하여야 함.
• 기본제공하는 발코니확장 공사는 계약포함품목 사항이며, 발코니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샘플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외관 및 세대 측벽에 당사 브랜드용 LED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주민공용시설은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분양가 영향 없음) • 당 사업은 주택성능등급제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님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및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 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 금액 (단위 : 원)	보증 기간
제 01222005-101-0003800호	100,204,36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상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전여임주금 등의 납부

• 보증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임주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전여임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전쟁,내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차명,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임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임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임주금 납부계좌임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임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주금
5) 보증회사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임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임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임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할 임주금 12) 주채무자가 임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임주예정일 이내에 임주금을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임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에서 가설장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7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전여임주금 및 제항 제4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임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임주금 중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임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매탄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두산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8-7 장성빌딩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등 록 번 호	124-86-12257	102-81-31754	120-81-50012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주)건축사이닝건축사사무소	₩ 3,296,411,522원(VAT 별도)	
전기감리 / 통신감리	(주)동도이엔씨	₩ 340,000,000원(VAT 별도)	
소방감리	상지이엔씨(주)	₩ 350,000,000원(VAT 별도)	

샘플하우스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352 매탄 위브하늘채 현장 내 위치

분양사무소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352 매탄 위브하늘채 단지내 상가 A동 205호(위치문의 : 031-211-5150)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weveapt.co.kr/suwon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여는 공급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산분양사무소 (분양문의 : 031-211-5150)

단지 배치도

※ 본 홍보물의 조감도 · 투시도 · 이미지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 103.48㎡ | 주거공용면적 · 27.81㎡ | 기타공용면적 · 40.20㎡ | 계약면적 · 171.50㎡ |

131.29㎡

Unit Plan

107.95㎡

| 전용면적 · 84.81㎡ | 주거공용면적 · 23.13㎡ | 기타공용면적 · 32.95㎡ | 계약면적 · 140.90㎡ |

■ 본 카탈로그의 상기 실내 투시도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품절 · 품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 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 중 각 기본 품목과 전시품목은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필히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면적은 등기면적 표현방식에 따라 소수점 두자리 미만에서 절사 되었습니다. ■ 창호와 문열림 방향은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홍보물상의 내용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 72.90㎡ | 주거공용면적 · 25.09㎡ | 기타공용면적 · 28.32㎡ | 계약면적 · 126.33㎡ |

98.00㎡

Unit Plan

81.05㎡

| 전용면적 · 59.98㎡ | 주거공용면적 · 21.07㎡ | 기타공용면적 · 23.30㎡ | 계약면적 · 104.35㎡ |

■ 본 카탈로그의 상기 실내 투시도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품질 · 품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 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 중 각 기본 품목과 전시품목은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필히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면적은 등기면적 표현방식에 따라 소수점 두자리 미만에서 절사 되었습니다. ■ 창호와 문엘림 방향은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홍보물상의 내용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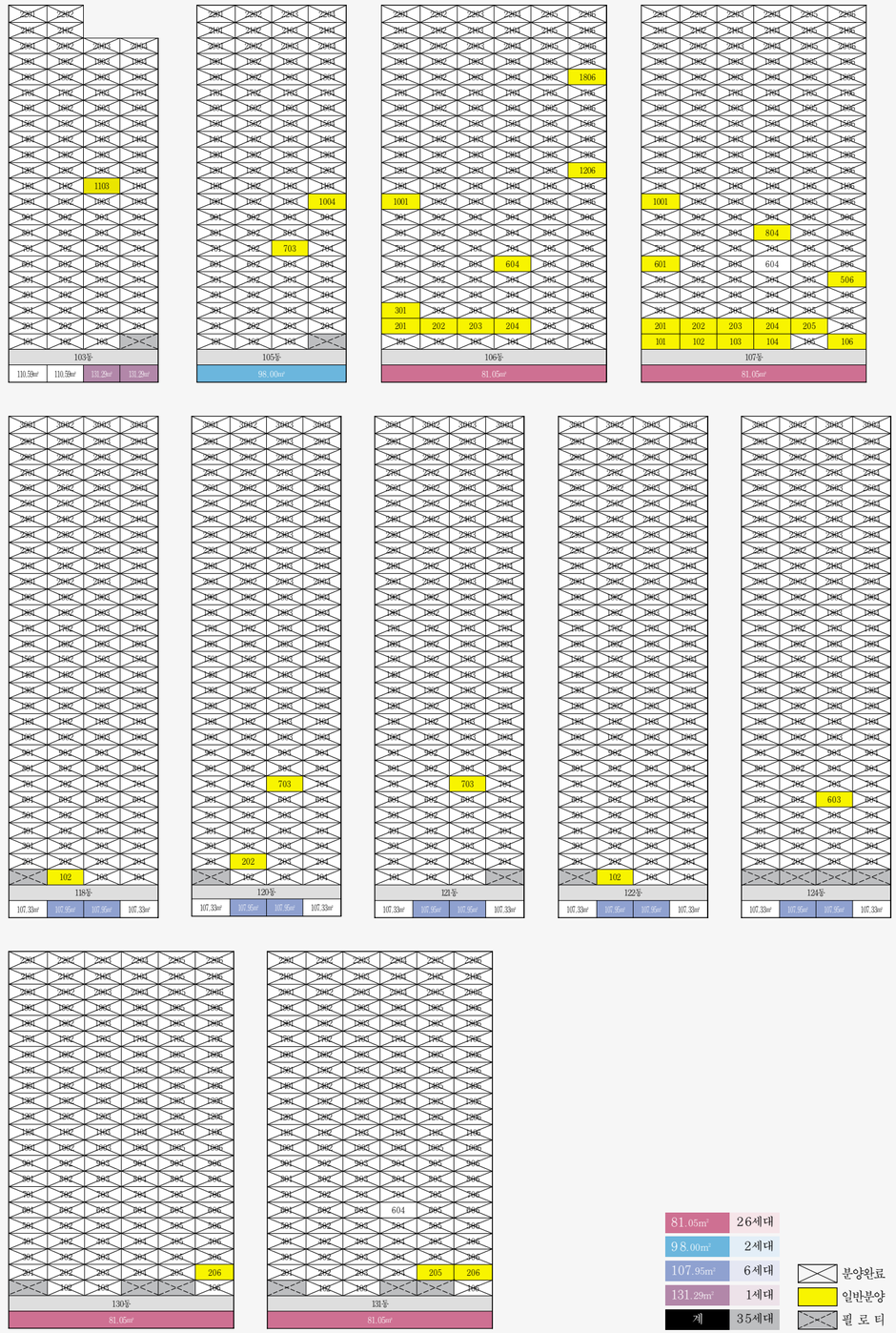
동 • 호수 배치도